

후대교배종 옥수수 GA21xT25

1.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제12조 3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제4-9조

2.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

	모품종 1	모품종 2
Event 명	GA21	T25
특성	제조제내성	제조제내성
심사완료일		

3. 심사경위

- '08.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
- '14.5.27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

4. 심사결과

- Southern blot 분석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들이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GA21xT25에 유전됨이 확인되었고, 이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mEPSPS 및 PAT 단백질들은 해당 모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글리포세이트 및 글루포시네이트 제조제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 있어서도 제조제저항성이 각각의 해당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분분석결과 대조품종과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성분이 더러 있으나 전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차이는 아니며 작물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비변형 대조품종과 대체로 유사하여 도입유전자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